# 교원 포상 규정

제정일 : 2007. 4. 17

개정일: 2019. 6.26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원 인사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전임교원(이하 "교원"이라 한다)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류) ① 교내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참빛학술상<개정 2019. 6. 26>
- 2. 참빛교육상<개정 2019. 6. 26>
- 3. Best Teacher상
- 4. 근속상
- 5. 산학협력상<신설 2019. 6. 26>
- 6. 기타 포상<호 변경 2019. 6. 26>
- ② 교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정부 포상
  - 2. 일반기관 포상
- 제3조(대상)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제2조 1항 1호 내지 3호까지의 포상의 경우 공무수행이 아닌 일반 해외파견 및 휴직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13. 2. 5, 2014. 4. 18>
- 제4조(위원회) 포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교원포상위원회를 둔다.
- **제5조(시상시기)** ① 제2조 제1항 1호내지 4호까지의 포상은 매년 본교 개교기념식에서 행한다. <개정 2013. 2. 5>
- ② 전 항 이외는 포상 사유 발생시에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. 2. 5>

### 제 2 장 교원포상위원회

- 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각 단과대학장, 인제니움학부대학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 단장,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 2. 5, 2016. 1. 8>
  -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교무처장, 각 단과대학장, 인제니움학부대학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 단장은 당연직이며,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3. 2. 5, 2016. 1. 8>
  -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지원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07. 8. 17, 2014. 4. 18>
- 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교원 포상에 관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
  - 2. 교내 · 외 교원 포상 대상자(추천자) 심사에 관한 사항
  - 3. 기타 교원 포상에 관련된 사항

- 제9조(심사기준) 교내·외 포상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3. 2. 5>
- 제10조(관계자 출석 요구 등)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조 명칭 변경 2013. 2. 5>
- 제11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2. 5>

### 제 3 장 참빛학술상

<장 명칭 변경 2019. 6. 26>

- **제12조의1(정의)** 전공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참빛학술상을 수여한다. <신설 2013. 2. 5>. <개정 2019. 6. 26>
- 제12조의2(인원) 인문사회분야 2인과 이공분야 3인 이하의 교원을 선정하여 참빛학술상을 시상한다. 단, 생활체육학과는 이공분야에 포함하며, 인제니움학부대학은 각 교원의 전공에 따른다. <개정 2013. 2. 5, 2015. 4. 20, 2016. 1. 8, 2019. 6. 26>
- 제13조(자격) 수상 자격은 5년 이상 광운대학교에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. 단, 최근 3년간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, 학술상을 수상한 교원이 속해있는 학과 소속 교원은 향후 2년간 수상자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3. 2. 5>
- **제14조(추천권자)** 참빛학술상은 추천에 의한다. 추천은 대학원장, 학장(인제니움학부대학장 포함)이 행한다. <개정 2013. 2. 5, 2015. 4. 20, 2016. 1. 8 ,2019. 6. 26>
- 제15조(심사대상) ①심사대상은 당해연도 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저자인 계열별 인정 논문과 전문학술저서 중 피추천자가 지정한 대표실적 3편의 점수를 대상으로 한다. 계열별 인정논문 및 저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.<개정 2013. 2. 5, 2016. 4. 20>
  - 1. 이공분야(건축, 건축공, 수학, 예체능 제외) : SCI급 논문 및 전문국제학술서적
  - 2. 인문사회분야(건축, 건축공, 수학, 예체능 포함) : 연구재단등재(후보)급 및 전문국내학술 서적 이상
  - ②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포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6. 4. 20>
- 제16조(제출서류) ① 추천인은 피 추천인에게 학술업적요약서를 제출받아 추천서와 함께 정해진 기일 안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2. 5, 2015. 4. 20>
  - ② 제출된 자료는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환한다.

## 제 4 장 참빛교육상

<장 명칭 변경 2019. 6. 26>

- 제 17조의1(정의) 헌신적인 교육과 봉사를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참빛교육상을 수여한다.<신설 2013. 2. 5>, <개정 2019. 6. 26>
- 제17조의2(인원) 인문사회분야 2인과 이공분야 3인 이하의 교원을 선정하여 참빛교육상을 시상한다. 단, 생활체육학과는 이공분야에 포함하며, 인제니움학부대학은 각 교원의 전공에 따른다. <개정 2013. 2. 5, 2015. 4. 20, 2016. 1. 8, 2019. 6. 26>
- **제18조(자격)** 수상 자격은 10년 이상 광운대학교에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. 단, 재직 중 참빛교육상 수 상 실적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13. 2. 5, 2019. 6. 26>
- **제19조(추천권자)** 참빛교육상은 추천에 의한다. 추천은 대학원장, 학장(인제니움학부대학장 포함)이 행한다. <개정 2013. 2. 5, 2015. 4. 20, 2016. 1. 8, 2019. 6. 26>
- 제20조(심사대상) ①심사는 당해연도 2월말을 기준으로 교육 및 봉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

2016. 4 .20. 2019. 6. 26>

- ②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포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6. 4 .20>
- 제21조(제출서류) ① 추천인은 피 추천인에게 교육업적목록을 제출받아 추천서와 함께 정해진 기일 안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20>
  - ② 제출된 자료는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환한다.

#### 제 5 장 Best Teacher상

- **제22조의1(정의)** 우수한 강의로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Best Teacher 상을 시상한다. <신설 2013. 2. 5>
- **제22조의2(인원)** 인문사회분야 1인과 이공분야 2인 이하의 교원을 선정하여 Best Teacher상을 시상한다. 단, 생활체육학과는 이공분야에 포함하며, 인제니움학부대학은 각 교원의 전공에 따른다.<개정 2013, 2, 5, 2016, 1, 8, 2016, 4, 20>
- **제23조(자격)** 수상 자격은 제 25조의 심사 대상강좌를 1년간 3강좌 이상(매학기 1강좌 이상, 각 강좌 전공 15명 이상, 교양 25명 이상)의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을 강의하고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4.0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.<개정 2013. 2. 5, 2015. 4. 20>
- **제24조(추천방법)**<조 명칭 변경 2019. 6. 26> ① 강의평가제도개선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원포상 위원회로 추천한다.<개정 2013. 2. 5, 2016. 1. 8, 2019. 6. 26>
  - ② <개정 2013. 2. 5, 2016. 1. 8><삭제 2019. 6. 26 >
- 제25조(심사) 심사 대상은 실험실습과목, team teaching 과목, 스포츠실습과목, 온라인 100% 과목을 제외하며,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포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3. 2. 5, 2015. 4. 20, 2016. 4. 20>
- 제26조(제출서류) 강의평가제도개선연구위원회는 소정의 추천서와 회의록을 정해진 기일 안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2. 5, 2019. 6. 26>

## 제 6 장 근속상

제27조(시상) 대학은 10년, 20년, 30년을 근속한 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별한 과실이 없는 교원에게 근속상을 수여한다.

### 제 7 장 기타 포상

제28조(시상 및 심사)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학교 명예를 높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하고 객관적인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포상을 시행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폐지) 이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광운대학교 화도학술상 및 교육상 시상 규정과 Best Teacher상(償) 제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부운영지침공지) 포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당해 연도 교내 포상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은 교내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한 포상위원회의 개최 전에 사전 공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지 1.] 참빛학술상의 논문인정점수 산출시 참고사항<개정 2015. 4. 20, 2019. 6. 26>

- ※ IF: Journal of Citation Reports의 최근 Impact Factor(학술지의 영향력 지수)
  - -> (학술지 논문의 피인용 횟수) / (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갯수)
- \*\* Median Impact Factor : 주제분야 내 학술지 Impact Factor의 중앙값 <개정 2015. 4. 20>
- \* MIF가 여러개일 경우 가장 높은 값 적용